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 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3 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 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4077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 2014-08-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 2024-12-05

정 보 공 개 서

롯데지알에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0000.00.00.

롯데지알에스(주)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롯데 GRS 79SQUARE)

[대표전화] 02 - 709 - 1114 [대표팩스] 02 - 709 - 1003

[신규개발팀] 02 - 708 - 040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 05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0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07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07
5. 최근 3개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08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 경력	-- 08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0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09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10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11
2. 크리스피크림 연혁	-- 11
3. 크리스피크림 업종	-- 11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크리스피크림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 11
5. 최근 3년간 크리스피크림 가맹점 수	-- 12
6. 크리스피크림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12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 13
8. 크리스피크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14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정보	-- 14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15
11. 가맹금 예치	-- 16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16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17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17
3. 형(刑)의 선고	-- 1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18
2. 영업 중의 부담	-- 23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25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8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29
3. 상품·용역·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3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31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33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33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37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39
9. 광고 및 판촉 활동	-- 41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44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44

VI. 가맹사업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45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 46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 47
2. 판매 촉진 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48
3. 경영활동 자문	-- 48
4. 신용제공 등 내역	-- 48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48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49
2. 교육일수 및 비용	-- 49
3. 교육·훈련의 주체	-- 49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49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5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52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53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 용 브랜 드		주 소			
롯데지알에스(주)	크리스파크림 외 2 개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롯데 GRS 79SQUARE)			
	설 립 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79.10.25	1979.10.25	1979.10.25	차우철	02-709-1114	02-709-1003
	법인등록번호	110111-0262850		사업자등록번호	106-81-2349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차우철	롯데리아 외 2 개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롯데 GRS 79SQUARE)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12.15 ~ 현재		차우철	02-709-1114	02-709-100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이장욱	롯데리아 외 2 개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롯데 GRS 79SQUARE)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03.21 ~ 현재		차우철	02-709-1114	02-709-100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송진욱	롯데리아 외 2 개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롯데 GRS 79SQUARE)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03.21 ~ 현재		차우철	02-709-1114	02-709-100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외이사	황문호	롯데리아 외 2 개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롯데 GRS 79SQUARE)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3.22 ~ 현재		차우철	02-709-1114	02-709-100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외이사	신동권	롯데리아 외 2 개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롯데 GRS 79SQUARE)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03.21 ~ 현재		차우철	02-709-1114	02-709-100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김동하	롯데리아 외 2 개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롯데 GRS 79SQUARE)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3.21 ~ 현재		차우철	02-709-1114	02-709-100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롯데웰푸드㈜	나뚜루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10 월 ~ 현재		이영구 이창엽	02-2670-6114	02-2670-6184
	법인등록번호	110111-6536481	사업자등록번호		186-81-0092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0 길 15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67.11 월 ~ 현재		박윤기	02-3479-9114	02-535-8619
	법인등록번호	110111-0003684	사업자등록번호		214-81-077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롯데쇼핑㈜	롯데슈퍼 외 1 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4 층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1.2 월 ~ 현재		김사무엘상현 정준호 강성현	02-2290-5684	02-2290-5997
	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86	사업자등록번호		104-81-26067 (206-85-1169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외 2 개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89.5 월 ~ 현재		김홍철	02-1577-0711	02-2671-6533
	법인등록번호	110111-0899976	사업자등록번호		208-81-27413

※ 롯데제과는 2022.07.01 롯데푸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2023.04.01 롯데제과에서 롯데웰푸드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용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 (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한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크리스피크림	-
상호	크리스피크림 OO 점	-
상표 (서비스표)		-
광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744,621	182,639	561,982	674,805	▲22,280	▲40,508
2022 년	816,406	186,628	629,778	773,300	5,320	▲8,859
2023 년	753,762	175,608	578,154	906,047	21,105	2,781

그 근거자료는 <별첨 1-1 대차대조표> 및 <별첨 1-2 손익계산서>와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2020 ~ 2023 년도 브랜드별 매출이 감사보고서에 구분되지 않았습
니다. 롯데지알에스(주)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근거자료는 <별첨 1-2 손익계산서>와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구 분	김동하	감사	2022. 03 ~ 현재	롯데지주 HR 혁신실 기업문화팀 팀장	비상근
	신동권	사외이사	2024. 03 ~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황문호	사외이사	2023. 03 ~ 현재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 교수	
	차우철	대표이사 부사장	2017.10 ~ 2020.12	롯데지주(주) 경영개선 1 팀장	경영개선 1 팀 총괄
			2020.12 ~ 현재	롯데지알에스(주) 대표이사	총괄
	이승주	상무보	2021.12 ~ 2022.12	경영지원부문 담당임원	경영지원부문 총괄

			2023.01 ~ 현재	경영전략부문 담당임원	경영전략부문 총괄
	이장목	사내이사 상무	2020.12 ~ 2022.12	글로벌사업부문 담당임원	글로벌사업부문 총괄
			2023.01 ~ 현재	햄버거부문 담당임원	햄버거부문 총괄
			2024.01 ~ 현재	FC 사업본부 담당임원	FC 사업본부 총괄
	홍성일	상무보	2019.01 ~ 2022.12	햄버거부문 담당임원	햄버거부문 총괄
			2023.01 ~ 현재	KKD 부문 담당임원	KKD 부문 총괄
	이원택	상무	2020.12 ~ 현재	마케팅부문 담당임원	마케팅부문 총괄
	최용환	상무보	2021.12 ~ 2023.12	커피부문 담당임원	커피부문 총괄
			2024.1 ~ 현재	ESG 부문 담당임원	ESG 부문 총괄
	이권형	상무보	2021.12 ~ 2022.12	KKD 부문 담당임원	KKD 부문 총괄
			2023.01 ~ 현재	글로벌사업부문 담당임원	글로벌사업부문 총괄
	이재용	상무보	2022.12 ~ 현재	점포개발부문 담당임원	점포개발부문 총괄
	권오삼	상무보	2022.12 ~ 현재	신성장사업부문 담당임원	신성장사업부문 총괄
	양정중	상무보	2023.7 ~ 현재	디자인센터 담당임원	디자인센터 총괄
	송진욱	사내이사 상무보	2024.3 ~ 현재	재경부문 담당임원	재경부문 총괄

7.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임원 : 2024년 04월 15일 기준)	11	3	5,57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①	사업내용 ^②
가맹본부	롯데지알에스(주)	가맹사업 경영	'80.7월~현재	롯데리아(등록번호 : 20080100155)라는 영업표지의 패스트푸드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07.2월~현재	엔제리너스(등록번호 : 20080100153)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14.11월~현재	크리스피크림(등록번호 : 20140778)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 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롯데월드푸드(주)	가맹사업 경영	'07.8월~20.03.31 (등록취소)	'보네스빠' (등록취소) 제과제빵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16.7월~20.03.31 (등록취소)	'빠유' (등록취소) 제과제빵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99.7월~현재	나뚜루'(등록번호 : 20080100085) 아이스크림/빙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코리아세븐	가맹사업 경영	'89.5월~현재	세븐일레븐(등록번호 : 20080100064)라는 영업표지의 편의점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90.11월~'24.03월 (등록취소)	'미니스톱' (등록번호 : 200080200069) 편의점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2월~'22.06월 (등록취소)	'수퍼바이츠' (등록번호 : 20210290) 편의점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롯데칠성음료(주)	가맹사업 경영	'10.11월~'23.4월 (등록취소)	'롯데칠성음료'(등록취소)라는 영업표지의 음료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롯데쇼핑(주)	가맹사업 경영	'11.10 월~현재	롯데슈퍼'(20231895)라는 브랜드의 슈퍼마켓 사업을 경영
		가맹사업 경영	'11.10 월~'21.7 월 (등록취소)	'롯데마켓999'(등록취소)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소매업 사업을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4월~현재	'롯데프레시'(등록번호 : 20200564)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소매업 사업을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별첨 2 지식재산권>과 같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크리스피크림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4 년 11 월 28 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4 년 12 월 16 일)

2. 크리스피크림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롯데리아	크리스피크림	노일식	2014.11.28 ~ 2017.06.2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 길 47
롯데지알에스(주)	크리스피크림	노일식	2017.06.30 ~ 2018.01.2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 길 47
롯데지알에스(주)	크리스피크림	남익우	2018.01.25 ~ 2020.12.1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 길 47
롯데지알에스(주)	크리스피크림	차우철	2020.12.15 ~ 2021.06.0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 길 47
롯데지알에스(주)	크리스피크림	차우철	2021.06.07 ~ 2024.03.24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104
롯데지알에스(주)	크리스피크림	차우철	2024.03.25 ~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3. 크리스피크림 업종

영업표지	업종	
크리스피크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제과제빵	도넛

4. 최근 3 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크리스피크림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 점)

지 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 체	가 맹	직 영	전 체	가 맹	직 영	전 체	가 맹	직 영
전 체	131	60	71	128	58	70	127	54	73
서 울	28	6	22	27	5	22	23	5	19
부 산	8	2	6	8	2	6	11	2	9
대 구	7	2	5	6	2	4	6	2	3
인 천	5	2	3	6	2	4	6	2	4
광 주	4	-	4	3	-	3	4	-	4
대 전	4	2	2	4	2	2	4	2	2
울 산	1	-	1	1	-	1	1	-	1
세 종	1	1	-	1	1	-	1	1	-
경 기	31	14	17	32	14	18	34	14	20
강 원	7	6	1	6	5	1	5	4	1
충 북	7	4	3	6	4	2	6	4	2
충 남	3	2	1	3	2	1	2	1	1
전 북	6	5	1	6	5	1	6	5	1
전 남	4	4	-	4	4	-	3	3	-
경 북	8	5	3	5	3	2	5	3	2
경 남	8	5	3	10	7	3	10	6	4
제 주	-	-	-	-	-	-	-	-	-

5. 최근 3 년간 크리스피크림 가맹점 수 (단위 : 점)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60	3	-	3	2	60
2022 년	60	-	1	1	1	58
2023 년	58	0	4	0	3	54

6. 크리스피크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크리스피크림 외에도 2 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모두 5 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본부	롯데지알에스㈜	롯데리아	20080100155	패스트푸드	1,211 / 115	1,193 / 106	1191/97
		엔제리너스	20080100153	커피	373 / 76	335 / 77	302 / 74
		크리스피크림	20140778	제과제빵	60 / 71	58/70	54/73
계열 회사	롯데쇼핑㈜	롯데슈퍼	20231895	종합소매점	32 / 201	16 / 65	7 / 121
		롯데마켓 999	20110100500	종합소매점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롯데프레시	20200564	종합소매점	66 / 63	109 / 114	135/91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20080100064	편의점	10,900 / 134	12,553 / 124	12,783/154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20100100112	(건강)식품	756 / 0	717/0	등록취소
	롯데웰푸드㈜	나뚜루	20080100085	아이스크림	48 / 3	34 / 2	25/1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2022.02.28	2022.12.31	2023.12.31
계열회사	롯데씨브이에스 711㈜	미니스톱	20080200069	편의점	2,568 / 23	1,508/17	190/3
		슈퍼바이츠	20210290	패스트푸드	0 / 3	-	-

※ 롯데씨브이에스 711㈜는 전년 정기변경까지 2 월말 기준으로 점포수가 작성되었으나, 당해년도 정기변경부터 12 월 결산으로 변경되어 22.12 월말 기준으로 점포수가 작성되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크리스피크림 가맹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매출액은 500,617 천원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215,825 천원에서부터 1,435,278 천원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店, 천원, 부가세제외시)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수	2023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 당	상한	면적 3.3 ㎡ 당	하한	면적 3.3 ㎡ 당	
전 체	54	500,617	20,992	1,435,278	105,165	215,825	4,496	
서 울	5	699,755	36,560	902,923	103,082	443,253	28,595	
부 산	2	484,457	12,799	516,552	24,954	452,363	8,225	
대 구	2	630,632	18,122	806,977	57,232	454,288	8,185	

인 천	2	608,209	29,525	781,050	31,880	435,368	26,070	
광 주								
대 전	2	338,832	12,457	341,754	14,006	335,910	11,197	
울 산								
세 종	1	557,861	25,129	557,861	25,129	557,861	25,129	
경 기	14	508,734	25,274	777,145	105,165	289,779	11,591	
강 원	4	409,922	14,358	593,090	20,810	239,680	11,045	
충 북	4	598,697	29,169	1,435,278	101,333	302,415	10,878	
충 남	1	215,825	4,496	215,825	4,496	215,825	4,496	
전 북	5	356,775	13,382	544,933	18,572	217,162	8,512	
전 남	3	383,441	11,738	407,129	16,285	365,399	8,995	
경 북	3	521,662	33,298	873,884	84,027	315,974	17,266	
경 남	6	496,778	23,922	871,977	81,493	288,716	12,588	
제 주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 항 ·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및 지점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POS 매출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신규매장 및 휴점기간을 가진 점포를 고려하여 월 평균 매출액에 12 개월을 곱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8. 크리스피크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크리스피크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54	2,539일(6년 11개월)

*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개점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크리스피크림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3 곳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중부 1 지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9		
	지점장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안유경	02-708-2048		1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직영운영(계약기간無)	X	X	X
	중부 2 지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9		
	지점장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방대석	02-708-2822		1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직영운영(계약기간無)	X	X	X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동부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6 번길 10 금복빌딩 4 층		
	지점장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오명철	051-506-8531		1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직영운영(계약기간 無)	X	X	X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광주, 제주, 전북, 전남	서부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30, 3F(용문동 수정빌딩)		
	지점장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전인중	042-531-6990		1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직영운영(계약기간 無)	X	X	X

10. 광고·판촉 지출내역

당사에서 2023 년에 크리스피크림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2,399 백만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1 쪽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부가세별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소계	23 년 합계	2,399	2,107	292	
광고	소계	비공개	1,80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625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165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소계	23 年 합계	598	306	29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5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45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9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79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4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37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37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43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4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36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4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54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광교종합금융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54	02) 2010-221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작성한 당사 서류를 제출하여 가상계좌 발급 받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 한 다음 롯데지알에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 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1.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크리스피크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440				
가맹금	3,300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및 시스템 실시권 부여	반환 금액은 잔여 계약기간 비율에 따름
초기경영지도비	7,700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초기경영지도에 소요된 비용	가맹본부 노하우 제공 대가
가입비	해당없음				
할부금 첫 지불액	해당없음				
선금임차료	해당없음				
교육비	440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교육 제공 이후	1 인당 교육비
기타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매출 (POS 매출)	담보목적물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부동산 (근저당권)	현금담보 및 보증보험		
A 구간	매출 40 백만미만	50 백만이상	40 백만이상	해당없음	예상매출에 따라 차등설정 → 가맹점 운영규칙 제 20 조 참조
B 구간	매출 40 백만이상 50 백만 미만	60 백만이상	48 백만이상		
C 구간	매출 50 백만이상 60 백만 미만	70 백만이상	56 백만이상		
D 구간	매출 60 백만이상	80 백만이상	64 백만이상		
E 구간	80 백만이상	100 백만이상	80 백만이상		
※신규점 → 최저 매출액 구간(A 구간) 기준으로 담보제공을 하되, 영업 1 년 후에는 실적에 의거 기존점 기준을 적용 ※기존점 → 전년 최고매출 3 개월 평균매출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정규, 상한)	금액(정규, 하한)
합계	91,440 이상	51,440 이상
가맹금	3,300	3,300
초기경영지도비	7,700	7,700
교육비	440	440
보증금	80,000 이상	40,000 이상
기타	매출에 따라 상이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4 물품내역>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설명드리기 전 먼저 당사의 시공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이 3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가맹본부 등록업체공사	등록업체 본부입찰	가맹점사업자 자체공사	비고
계약주체	점주↔시공업체 (당사등록업체)	점주↔본부↔시공업체 (가맹본부 입찰)	가맹점 사업자 자체공사	공사진행 방법은 점주선택 사항
도면설계비	면적과 공사금액에 따라 변동 (최소 1,100 ~ 최대 8,800)			
시공관리비	77 천원 / 3.3㎡	X	77 천원 / 3.3㎡	

매뉴얼비	X	X	165 천원 / 3.3 m ²	
입찰, 시공관리 수수료	X	공사계약금액의 15%	X	
지급기한	공사전			

※도면설계비: 실측, 레이아웃, 시공 계획도면 (실측도, 평면도, 천정, 바닥, 입면, 설비 등), 예가산출 등 비용

※시공관리비: 현장실측, 레이아웃 적용, 시공 계획도면, 예가 및 기기 투자 금액 산출, 기기 입고 관리, 공사 매뉴얼 관리 등의 업무 진행 비용

※매뉴얼비: 점주개인공사에 따른 당사 매뉴얼 지급 (3~5 년 주기 신규 디자인 개발)

※가맹점사업자가 자체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가맹본부 등록업체 본부입찰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미리 보유중인 업체 POOL 을 활용한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찰, 시공관리 수수료 : 가맹본부전자입찰 의뢰에 따른 시공관리비외 입찰대행수수료

가맹본부 등록업체를 통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10 평		지급기한	반환 조건	비고
		금액	면적 3.3 m ² 당 금액			
총계		43,776	4,378			
인테리어	시공업체	20,588	2,059	공사 전	착공 전 계약취소	업체선정은 점주선택
장비	롯데 지알에스(주)	23,188	2,319	설치 전	설치 전 계약취소	
시공관리비	롯데지알에스(주)	770	77	공사 전	착공 전 계약취소	
최초공급 상품비용	롯데지알에스(주)	7,700	-	-	상품 미공급시	

※실측, 레이아웃, 시공계획도면, 예가산출 등 진행 후 계약취소 시, 면적과 공사예상금액에 따라 설계비 발생 (최소 330 ~ 최대 8,800) 개점진행시 주방기기, 집기비품 항목내 설계비용 포함.

※냉,난방기기는 점주 별도 계약 및 설치 진행(삼성, LG)

※인테리어 공사비 내 설비공사 포함 금액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의 가맹점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차이가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인테리어 및 기기 업체를 통하여 예상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신규개발팀 (전화:02-708-0404)	가맹 희망자 온라인 접수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조사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개발·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 받거나 귀하의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 가맹점 계약 체결 후 개점전에 가맹계약자 또는 실제운영자는 점포관리자 양성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 인·형사상 처벌 경력이 없으며, 점포운영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자 - 회사 규정에 맞는 담보제공 가능자 - 신용 평가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업원	-가맹점 계약과 동시에 만 19 세(수료일 기준) 이상의 점포관리자(점장, 부점장)와 기존점 신규관리자는 점포관리자 양성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한다.	-관리자 정원 기준 (최성수기 3 개월 평균매출) 매출 70 백만 미만 : 2 명 매출 70 백만 이상 : 3 명 - 점포근무자는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채용한다. 단,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은 불합리하게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 양성교육 이수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사자를 채용 시 전 가맹점 대표자의 동의 필요 - 퇴사 후 2 년 이상 경과자 채용시 재교육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크리스피크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가맹금 분납 제도 : 해당 사항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부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41 쪽에 나와있습니다.

1) 비용부담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교육훈련비	롯데지알에스㈜	440	계약시/입교시	입교 이전	교육 제공 이후	1 인당 교육비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부담금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영업지역보상금	해당없음					
재고관리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롯데지알에스㈜	교체전 시설, 기기전체	가맹본부와 협의	해당없음	가맹본부와 협의	
간판변경비용	롯데지알에스㈜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본부와 협의	가맹본부에 반환 조건 있음 (아래※1 참조)	가맹본부와 협의	
인테리어 노후시설 보수비용	가맹사업자가 업체선정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업체 계약에 따름	가맹본부에 반환 조건 있음 (아래※1 참조)	해당업체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롯데지알에스㈜	아래※2 참조		해당없음	위약벌	

※1)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대금을 미납하거나 기타의 금전채무를 체납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급 기일로부터 [15]일의 유예기간 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각 기수마다 미납금액에 대하여 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기수라 함은 매달 [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그리고 매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 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 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39 쪽에 나와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계약 연장 및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적 이미지 보호나 시장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가맹점주의 계약 연장 요청시점의 전년도 월 평균 순매출과 경상이익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가맹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인정되거나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점포이전이나 노후시설보수 등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① 담보제공 : 현금, 부동산 또는 이를 혼합한 담보 제공

▶ 부동산 제공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월평균 매출	근저당 설정액	채권관리 한도액
A 구간	40 미만	50 이상	근저당 설정액의 80% 이하
B 구간	40 이상 ~ 50 미만	60 이상	

C 구간	50 이상 ~ 60 미만	70 이상	
D 구간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E 구간	80 이상	100 이상	
※신규점 → 최저 매출액 구간(A 구간) 기준으로 담보제공을 하되, 영업 1 년 후에는 실적에 의거 기존점 기준을 적용 ※기존점 → 전년 최고매출 3 개월 평균매출			

▶ 근저당 미설정 시 현금 40 백만원(근저당 설정액 80%) 이상 예치

② 가맹금 납부 부분

- ㄱ. "법인"의 대표자의 명의변경(실질적 영업양수도의 경우 예외)
- ㄴ.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의 승계
- ㄷ. 개인이 법인설립으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가 될 때
- ㄹ.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될 때
- ㅁ. 기존 점포가 대표자 명의변경 없이 점포 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할 때
상기 사유에 해당시는 가맹금 추가 납입하지 않고 잔여 계약기간까지만 승계

③ 이외의 제 3 자간 명의변경시

- ㄱ. 가맹사업자가 5 년 계약기간을 신규로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금 및 초기경영지도비를 납부
- ㄴ. 가맹사업자가 기존 계약승계를 원하는 경우 초기경영지도비를 납부하며 잔여 계약기간을 승계

④ 본부지원 분할상환 금액 : 일시불로 완납 후 명의변경 실시

⑤ 양도·양수가액 : 본부와 의 금전거래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금전거래

(인테리어, 주방기기, 간판, 의탁자, 전산장비, 냉난방기,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

잔존가는 초기투자비 ÷ 60 개월 x 잔존개월수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에는 본 계약에 따른 각종 권리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가맹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① 가맹점은 점포의 운영을 즉시 중지하며 점포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점포라는 것을 소비자 또는 공중에게 직, 간접적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 ② 가맹점은 본 프랜차이즈시스템이나 크리스피크림 지식재산권과 관련되는 식단, 설비, 방법, 절차 및 기술, 그리고 본 프랜차이즈시스템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다른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광고 등에 의한 사용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중지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은 크리스피크림 지식재산권이 표시된 간판, 기구, 설치물, 광고물, 서식용지 등의 물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이 본 계약에서 지정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점포나 영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운영하기 시작한 경우, 가맹점은 혼동, 오인 또는 기만할 염려가 있는 다른 영업과 관련하여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지식재산권의 복제물, 위조물, 사본, 모조품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며 또한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오해 또는 오인할 수 있는 출처의 표시, 설명,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 또한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에 따른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맹점으로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모든 매뉴얼, 기록, 파일, 지시, 서신, 기타 가맹점이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소유로 인식되는 모든 문서 또는 자료를 가맹본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체결한 계약서의 가맹점의 보관분이나 당사자간의 서신 및 법규정에 따르기 위해 가맹점이 필요로 하는 서류나, 자료를 제외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 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크리스피크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별첨 4-1 물품 내역(용역 및 설비)> 및 <별첨 4-2 물품 내역(원부재료)>와 같습니다.

귀하가 <별첨 4-1 물품 내역(용역 및 설비)> 및 <별첨 4-2 물품 내역(원부재료)>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주요 품목(설비)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주요 품목(설비)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 5-1>과 같습니다.

3) 주요 품목(원부재료)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주요 품목(원부재료)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 5-2>와 같습니다.

4)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원) ¹	비고
롯데웰푸드(주)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
롯데상사(주)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롯데알미늄(주)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
롯데칠성음료(주)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
롯데정보통신(주)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
롯데네슬레코리아(주)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계			비공개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본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당사가 [본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¹ 경제적 이익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 따라 매출액을 기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과 같습니다.

귀하가 별첨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첨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당사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신규 상품과 용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7 상품·용역 권장가격>과 같습니다.

※ 귀하가 <별첨 7 상품·용역 권장가격>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통보하고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신규 상품과 용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제과제빵	크리스피크림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단1. 핵심상권의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에 예외인정 단2. 대형유통시설(백화점, 아울렛,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할인점(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기타 할인점내, 특수상권(병원, 터미널, 역사, 공항, 공원, 리조트(위락지), 대형평수 등 본부에서 특수상권으로 판단하는 지역) 등 내 예외인정 단3. 강, 호수, 산, 지형지물 등 영업지역이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예외인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명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크리스피 크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본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컬리	https://www.kurly.com	도넛	상품은 각 채널에 납품, 판매 후 가맹점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 시간대에 배송됩니다
	SSG 배송	www.ssg.com	도넛	
	쿠팡	www.coupang.com	도넛	
	롯데잇츠	www.lotteeatz.com	텀블러 등	해당 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 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24.5	75.5	15.5	84.5

*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 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가맹점 전용상품 수 ÷ 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수 ÷ 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크리스피크림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5 년 입니다. (갱신 시 계약기간도 동일)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일 이전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일 ~ D-150 일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일 이전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D-180 일 ~ D-150 일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D-180 일 ~ D-150 일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90 일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90 일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1 일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1 일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1 일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함 (가맹본부가 계약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금, 원·부재료 대금 등 이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①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①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①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①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①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①
7.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 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⑤
8.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⑤
9.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⑤
10.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⑤
11.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7 조 ⑤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②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②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②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②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②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②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②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②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②
10. 가맹점사업자가 6 개월에 걸쳐 연체한 월을 포함하여 직전 5 개월 동안 3 회 이상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11. 가맹점사업자가 2 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1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 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1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제시 주방기기의 설치·사용 의무를 2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 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1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1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에 따른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1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19. 본 계약에 의거 가맹본부가요구하는 회계 및 기록 등을 포함한 재정정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총 3 회 이상 불이행, 거부 또는 해태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2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회계장부, 기록, 계산서 등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결과 고의적 매출누락 및 매출에 관련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또는 누락에 대한 추가지불(상품대금 및 연체이자, 조사비용 등)이 지연되는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21. 점포건물이 수리나 재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 파괴된 경우. 단, 가맹점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건물의 수리·재건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2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①
23.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 38 조 ③

귀하에게 [1 ~ 9]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을 그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10 ~22]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 회에 걸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계약 수정의 자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지금까지 계약기간 내 계약서 변경 사례 없음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제 3 자 명의변경 시 (개인간 또는 법인간)	- 영업보고서 작성 - 양도인 : 가맹점 협조전, 변경사유서 - 양수인 : 신청자평가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신용평가서 - 지점장 : 면담보고서 - 품의서 작성 - 영업보고서 전체 - 점포 명의변경 현황 - 점포현황 - 가맹 계약 전 확인서 및 양도/양수 확인서 - 본부 결제대금 확인서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각 1 부) - 상권확인서 - 상권지도 - 가맹계약서 작성 - 명의변경일 전까지 가맹금 납입 - 해당 월말 까지 가맹점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익월 5일까지 본부 송부 - 협조전 발송(품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재경팀 :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 개발팀 : 담보관련	담당 SV 작성 및 확인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 승계	점포운영권 전체	- 영업보고서 작성 - 가맹점 협조전, 변경사유서, 신청자 평가서,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1 부 - 담보서류(담보변경 시)	가맹금 면제

		2. 품의서 작성 - 영업보고서 전체 - 점포명의변경 현황, 점포현황 - 인감증명서 3. 가맹계약서 작성 - 해당 월말 까지 가맹점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익월 5 일까지 본부 송부 4. 협조전 발송(품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재경팀 :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 개발팀 : 담보관련	담당 SV 작성 가맹금 면제 담당 SV 작성
대리행사		해당사항 없음	
위탁		해당사항 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의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크리스피크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시스템의 통일적 이미지 및 대외적 신용도 확보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 영업휴무일 및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중 무휴, 오전 8:00 ~ 오후 11:00 (점포별, 상권별 차이에 따라 변경 가능)	2 대 명절 (설, 추석) 당일은 가맹점 자체 휴일 결정

매출증진도모 및 점포관리력 개선을 목적으로 영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 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 명 이상	-	점주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회계 및 재고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바일 점포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크리스피크림 프랜차이즈시스템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발전을 위해 기업광고와 상품광고 등 본 프랜차이즈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광고를 총괄하며, 창작내용과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광고, 시행배분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전국적인 광고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맹점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한 정기 및 수시 판촉 활동 등이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당사의 판촉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촉계획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되, 당사는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판촉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광고 및 판촉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가 일부 부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그 사용내역 및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당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근거자료가 회사 경영상의 기밀인 경우 당사는 그 사용내역만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분담 절차	비고
기업광고 +상품광고	100%	0%	가맹점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광고대금의 일부 청구 가능	대중매체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0%	가맹점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광고대금의 일부 청구 가능	대중매체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0%	가맹점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광고대금의 일부 청구 가능	대중매체 광고
판촉고지물	100%	0%	별도 절차 없음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 행사참여 결정 -> 최종분담금 확정	점포고지
판촉 비용	50%	50%	행사 계획 공고	1.경품의 경우 당사제품외 전액 본부부담 2.원가기준 50%가맹본부부담 (개별행사시 협의후 조정 가능)

당사는 가맹점과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제휴할인

구분	가맹점 부담	가맹본부 부담	분담 절차	비고
SK 플래닛 (제품 4~7 중 30%할인)	50%	50%	행사 계획 공고	제휴사 수수료 4.75% 가맹본부 전액지원
OK 캐쉬백 할인 (보유 포인트 내 차감 할인)	50%	50%	행사 계획 공고	제휴사 수수료 4% 가맹본부 50% 지원

② L.POINT 카드

1)	가맹점사업자는 L.POINT 카드 회원이 점포에서 제품 구매시, 회원등급에 따라 결제 금액의 0.3%(일반회원), 0.5%(우수회원)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제휴에 의해 할인(통신사, 타 제휴채널: SKT, OK 캐쉬백 등)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 적립은 불가합니다. 최소 10 원 단위로 사용가능하며, 1 점은 현금 1 원에 해당합니다.
2)	우수회원은 햄버거, 커피의 경우 연간 12 회 이상 방문(포인트 적립), KKD의 경우 연간 4 회 이상 방문(포인트 적립)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포인트 적립 금액은 전액 본부가 부담합니다.
4)	L.POINT 카드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는 회원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만 보유하고 개인정보는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서만 사용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는 L.POINT 카드와 관련하여 얻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부정한 방법 (타인 및 고객의 영수증을 사용하여 본인의 L.POINT 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L.POINT 카드의 운영방법은 가맹본부의 영업 정책이나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 쿠폰 및 카드형 금액권

구분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분담 절차	비고
기프티엘	금액권	50%	50%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 상품권 판매가액의 8% 비용부담)
	제품교환권	50%	50%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 상품권 판매가액의 10% 비용부담)
기프티샷	금액권	50%	50%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 상품권 판매가액의 8% 비용부담)
	제품교환권	50%	50%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 상품권 판매가액의 10% 비용부담)
카드형 금액권	선불카드형	50%	50%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 상품권 판매가액의 10% 비용부담)
	B2B	68.75%	31.25%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 상품권 판매가액의 16% 비용부담)
롯데이츠	금액권	16.67%	83.33%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 상품권 판매가액의 3% 비용부담)
	제품교환형	16.67%	83.33%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 상품권 판매가액의 3% 비용부담)

※ 모바일 쿠폰, 카드형금액권 종류 및 수수료는 대행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점 및 본사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의무불이행의 결과로 당사에 발행하거나 당사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후에 본 계약 조항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및 이행을 위한 가처분 등을 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보수, 기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할 경우 당사는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면경고, 상품의 배송 및 각종 지원활동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판매대금을 미납하거나 기타의 금전채무를 체납하면 귀하는 지급기일로부터 [15]일의 유예기간 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각 기수마다 미납금액에 대하여 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기수라 함은 매달 [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그리고 매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20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가맹희망자 문의	- 온라인 접수(당사 가맹접수시스템)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즉시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가맹 희망자 협의를 통한 입지선정 - 입지주위 점포 정보 제공	1 주일	-
최종 협의	- 개설승인 - 계약서 제공	2 주일	-
가맹계약 체결	- 계약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 일	-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19p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2 주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15 ~ 20 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실시(가스기기, 기타기기 입고 포함)	25 ~ 30 일	-
장비 입고	- 주방기기, 집기 등 점포 입고	2~3 일	21p 참조
교육 실시	- 점포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10 일	52p 참조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즉시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지점, 담당 SV 를 통해 고충사항을 접수,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영업팀에도 가맹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KD 사업팀	02-709-6921
해당지점	15 쪽 가맹지역본부의 일반정보 참조

이와는 별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02-3445-9898,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초기 인력지원	가맹점 개점시 가맹본부파견관리자를 통하여 영업활동 등을 지원	가맹점 개점 초기에 한해서 지원	1)정상근무(8시간)기준시 5일 이내 무상지원 2)Full근무(영업시간종일근무)시 정상근무 2일로간주하여 3일 이내 무상지원	가맹본부 협의후 지원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필요시 또는 가맹사업자 요청 시	제품소개, 시장분석, 판매증진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인력 파견현황, 소요비용 등 포함)에 의한 경영 지도 실시 -> 경영지도후 결과 제시 또는 인력파견 결정	가맹본부 필요시 가맹사업자와 협의 또는 가맹사업자 요청시 가맹사업자 부담	

4. 신용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크리스피크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교육방법	교육일수	비고
점포 관리자 양성교육	가맹점 계약과 동시에 가맹계약자 또는 실제 운영자 및 점포관리자(점장,부점장) 그리고 기존점 신규관리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			
	▶Off JT : 오리엔테이션, 반제품 2 차 프로세싱, 점객/POS, 음료 노동관계법, 식품위생법, PL 법 등	집체교육	5 일	필수교육
	▶OJT : 점포 개시/마감 실습, CCP, PT 관리, 점포 위생, 발주 관리	현장교육	5 일	

2. 교육일수 및 비용

귀하가 크리스피크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일수(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VAT 별도)

구분	교육일수	비용	비고
점포관리자 양성교육	10 일	400,000	최초 가맹 계약 시 또는 신규관리자 채용 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8 조에 따라 교육 대상자는 30 일 내로 교육생을 추천, 참석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8 조에 따라 교육대상자는 30 일 내로 교육생을 추천, 참석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주소)
1	서울	강남역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6 강남 8258 빌딩 B1F
2	서울	건대스타시티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자양동) 스타시티 지하 1 층
3	경기	광명역사점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서편 맞이방
4	광주	광주첨단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36(월계동)
5	경상	구미역사점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2 층
6	광주	금호터미널점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유스퀘어(광천터미널)1 층(광천동)
7	경남	김해봉황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58
8	서울	남영역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7 길 15(갈월동, 대아빌딩)
9	대구	대구동성로중앙점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2-1, 1 층
10	대구	대구범어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8, 1 층
11	대전	대전둔산점	대전 서구 둔산중로 46, 1 층(둔산동)
12	대전	대전복합터미널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9 서관 1 층(W42~47 호)
13	서울	대치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23 1 층
14	경기	동탄역사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51, 동탄역사 지하 4 층 일부 (오산동)
15	광주	롯데광주수완아울렛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98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1 층
16	경기	롯데구리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61 롯데백화점 구리점 지하 1 층
17	경남	롯데김해아울렛점	경남 김해시 장유로 469, D 동 109
18	서울	롯데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14(상계동) 롯데백화점 지하 1 층
19	경기	롯데몰수원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24 롯데몰수원점 3
20	경기	롯데몰수지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 2 로 38 롯데몰수지점 3 층
21	광주	롯데백광주점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8 롯데백화점 광주점
22	경기	롯데백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60, 동탄역 롯데캐슬 판매시설 지하 1 층(오산동)
23	부산	롯데백부산점	부산 부산진구 부전 2 동 503-15 번지 9 층
24	대구	롯데상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2 롯데백화점 상인점 지하 1 층
25	부산	롯데센텀시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9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 층

26	경기	롯데아울렛광교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 3 층
27	경남	롯데워터파크김해점	경남 김해시 장유로 555 롯데워터파크 김해
28	경기	롯데이천아울렛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프리미엄아울렛로 177-74
29	경기	롯데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일산점 지하 2 층
30	전라	롯데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 1 층
31	경기	롯데중동점	경기 부천시 길주로 300
32	경상	롯데창원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4 롯데백화점 창원점 지하 1 층
33	서울	롯데청량리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지하 2 층
34	경기	롯데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롯데백화점 지하 1 층
35	경상	롯데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62 롯데백화점 포항점 지하 1 층
36	경기	롯데피트인산본점	경기 군포시 군포로 485 번길 롯데피트인산본
37	서울	메세나폴리스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지하 1 층
38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미아점) 지하 2 층
39	부산	부산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31(장전동 414-25)
40	부산	부산롯데광복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 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 1 층
41	부산	부산역사점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사 內 2 층 신맛이방
42	부산	부산연산점	부산 연제구 연산동 590-39 번지
43	부산	부산하단역점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지하 1415 (하단역)
44	부산	부산양정역점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930 (양정역)
45	부산	부산사상역점	부산 사상구 지하로 203 (2 호선 사상역 디저트카페 시설)
46	경기	분당수내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 번길 45 롯데백화점분당점 B1
47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47 사당타워 나동 1 층
48	서울	서울대입구역점	서울 관악구 관악로 202 크리스피크림 서울대입구역점 1 층
49	서울	소공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백화점 지하
50	인천	송도국제도시점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20 113 호, 114 호
51	서울	수서역사점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지하 1 층 맞이방층
52	경기	수원역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 층
53	경기	수원인계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0
54	서울	여의도점	

55	경기	역곡역점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1 역곡역 2 층 맞이방
56	서울	영등포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영등포동)
57	서울	오목교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00(목동, 현대하이페리온 2) 206 동 104~5 호
58	울산	울산삼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1 정앤정 크리빌 1 층
59	강원	원주무실점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59
60	경기	의정부민락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73
61	인천	인천공항 1 층점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역
62	인천	인천공항 T2 점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제 2 여객터미널 3 층
63	인천	인천구월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토타워 1 층
64	서울	잠실롯데월드몰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올림픽로 300 지하 1 층
65	서울	잠실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지하 1 층
66	충청	천안터미널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아라리오 B 관 4 층
67	충청	청주터미널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68	서울	코엑스몰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B1
69	경기	평택역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3 층 맞이방
70	경기	현대아울렛 스페이스원점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1 층
71	경기	현대중동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50-22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1F
72	충청	현대충청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08 현대백화점 충청점 지하 1 층
73	서울	화곡역점	서울 강서구 화곡로 15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 고
8 년 6 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1,204,282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준법경영팀(02 - 709 - 69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lotteria.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목 차

<별첨 1-1 대차대조표>

<별첨 1-2 손익계산서>

<별첨 2 지식재산권>

<별첨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별첨 4-1 물품 내역(용역설비)>

<별첨 4-2 물품 내역(원부재료)>

<별첨 5-1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 상하한(용역설비)>

<별첨 5-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 상하한(원부재료)>

<별첨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별첨 7 상품 · 용역 권장가격>

<별첨 1-1 대차대조표>

1. 대 차 대 조 표

당기 : 제 45 기 2023 년 12 월 31 일 현재

전기 : 제 44 기 2022 년 12 월 31 일 현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1. 대 차 대 조 표

당기 : 제 44 기 2022 년 12 월 31 일 현재

전기 : 제 43 기 2021 년 12 월 31 일 현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1. 대 차 대 조 표

당기 : 제 43 기 2021 년 12 월 31 일 현재

전기 : 제 42 기 2020 년 12 월 31 일 현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2 손익계산서>

2. 손 익 계 산 서

당기 : 제 45 기 2023 년 12 월 31 일 현재

전기 : 제 44 기 2022 년 12 월 31 일 현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손 익 계 산 서

당기 : 제 44 기 2022 년 12 월 31 일 현재

전기 : 제 43 기 2021 년 12 월 31 일 현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손 익 계 산 서

당기 : 제 43 기 2021 년 12 월 31 일 현재

전기 : 제 42 기 2020 년 12 월 31 일 현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지식재산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1 물품 내역(용역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2 물품 내역(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1 주요 품목 상하한(용역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2 주요 품목 상하한(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영역의 판매 제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7 상품 · 용역 권장가격>

상품·용역명		권장가격(원)	가격통보 방법	비고
싱글 도넛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1,700		
	글레이즈드 사워크림	1,900		
	글레이즈드 초콜릿케익	1,900		
	미니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1,000		
	초코홀릭	1,900		
	초콜릿 아이스드 글레이즈드	1,900		
	프리미엄 스트로베리 필드	2,200		
	뉴욕 치즈케익	2,200		
	로투스 비스코프 도넛	2,200		
	슈가 코티드	1,700		
	오리지널 초콜릿 필드	2,000		
	오리지널 우유크림 필드	2,000		
	우유크림 듬뿍	2,200		
	초코우유크림 듬뿍	2,200		
	메이플링	1,900		
	트윈베어 벌룬	3,200		
	하리보 랜드마크	3,200		
	웰컴 골드베어	3,200		
	하리보 매직 쇼	3,400		
도넛 더즌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더즌	16,000		
	오리지널 하프더즌	10,200		
	어쏘티드 하프더즌	11,800		
	어쏘티드 믹스 1 더즌	18,000		
	어쏘티드 더즌(선택)	20,000		
	시즌 더즌	23,800		
	시즌 하프더즌	15,500		
	미니 오리지널 세트	9,000		
세트	오리지널 페어링	5,000		
	스페셜 페어링	5,500		
	핫샌드콤보	6,500		
	배달)커플세트	17,200		
커피류	아메리카노(S)	3,700		
	아메리카노(M)	4,200		
	아이스 아메리카노(S)	3700		

		아이스 아메리카노(M)	4,200		
		아이스 아메리카노(L)	4,700		
		아이스 아메리카노(XL)	5,700		
		라떼(S)	3,900		
		라떼(M)	4,400		
		아이스 라떼(S)	3,900		
		아이스 라떼(M)	4,400		
		아이스 라떼(L)	4,900		
		아이스 라떼(XL)	5,900		
		모카(S)	4,400		
		모카(M)	4,900		
		아이스 모카(S)	4,400		
		아이스 모카(M)	4,900		
		카푸치노(S)	3,900		
		카푸치노(M)	4,400		
		아이스 카푸치노(S)	3,900		
		아이스 카푸치노(M)	4,400		
		카라멜 마끼야또(S)	4,400		
		카라멜 마끼야또(M)	4,900		
		아이스 카라멜 마끼야또(S)	4,400		
		아이스 카라멜 마끼야또(M)	4,900		
		바닐라 라떼(S)	4,400		
		바닐라 라떼(M)	4,900		
		아이스 바닐라 라떼(S)	4,400		
		아이스 바닐라 라떼(M)	4,900		
아더 드링크		스트로베리 스무디(M)	5,500		
		망고 스무디(M)	5,500		
		살구자두 스무디(M)	5,500		
		메론 스무디(M)	5,500		
		다크 핫초콜릿(S)	3,700		
		다크 핫초콜릿(M)	4,200		
		다크 아이스 초콜릿(S)	3,700		
		다크 아이스 초콜릿(M)	4,200		
		밀크티(S)	4,200		
		밀크티(M)	4,700		
		아이스 밀크티(S)	4,200		
		아이스 밀크티(M)	4,700		
		자몽블랙티(M)	4,400		

	아이스 자몽블랙티(L)	4,900		
	유자민트티(M)	4,400		
	아이스 유자민트티(L)	4,900		
	아이스 청귤캐모마일티(L)	4,900		
	크리스피 아이스크림콘	2,000		
	밀크 셰이크	2,900		
	스트로베리 셰이크	3,500		
	순수우유 소프트콘	3,500		
	순수우유 셰이크	5,500		
	순수우유 딸기 셰이크	6,000		
RTD	에비앙(500ML)	2,200		
	골든메달 애플주스	4,000		
	골든메달 스파클링	4,000		
	아이스스	1,000		
	펄시콜라	2,700		
	철성사이다	2,700		
	립톤 아이스티 복숭아	2,500		
	노아_당근진저사과	5,000		
	노아_바나나린치망고	5,000		
	노아_애플구아바플러스	5,000		
	브레드 이발소 오렌지망고	2,000		
	브레드 이발소 포도사과	2,000		
	파스퇴르 무항생제 우유	1,500		
	뽀로로 보리차	2,000		
	뽀로로 밀크맛	2,000		
아이스크림	크리스피 아이스크림 콘	2,000		
	순수우유 소프트콘	3,500		
베이커드	크로크 무슈	4,000		
판매용품	골드 보타이 머그	9,000		
	클래식 보타이 머그	9,000		
	화이트골드 보타이 머그	9,000		
	클래식 도트 시그니처 머그(L)	9,000		
	클래식 도트 시그니처 머그(M)	7,000		
	클래식 도트 시그니처 머그(S)	5,000		
	모던 골드링 시그니처 머그(L)	9,000		
	모던 골드링 시그니처 머그(M)	7,000		
	모던 골드링 시그니처 머그(S)	5,000		

	비비드 레드 시그니처 머그(L)	9,000		
	비비드 레드 시그니처 머그(M)	7,000		
	비비드 레드 시그니처 머그(S)	5,000		
	비비드 그린 시그니처 머그(L)	9,000		
	비비드 그린 시그니처 머그(M)	7,000		
	비비드 그린 시그니처 머그(S)	5,000		
	알파인 플라스크 텀블러(화이트)	32,000		
	알파인 플라스크 텀블러(버건디)	32,000		
	캠핑&펫보틀 텀블러(블루)	38,000		
	캠핑&펫보틀 텀블러(화이트)	38,000		
	골드 이중글라스	12,000		
	실버 이중글라스	12,000		
	과트로캔틴 텀블러(메탈그린)	34,000		
	과트로캔틴 텀블러(메탈레드)	34,000		
	페이퍼컵 머그	12,000		
	보타이미니 머그	4,500		
	하트머그(핑크)	10,000		
	하트머그(민트)	10,000		
	드립백_에티오피아의 아침	8,000		
	드립백_콜롬비아의 꿈	8,000		
	에스프레소 미니머그	3,000		

※귀하가 이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